

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아량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0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2일  
발 의 자 : 송아량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정진철, 김태호, 김상훈,  
전석기, 김평남, 김제리,  
김기덕, 김광수, 장상기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 이동·보관·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영 제11조,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)

그런데 우리시 조례에서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도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(조례 제10조,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)

따라서 조례에서는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넓게 정하였는바,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

## 2. 주요내용

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주체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관련 규정의 “자전거주차장 설치·관리자”를 “구청장”으로 개정하여 상위

법령 위배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자전거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